

현안분석 2001-

디지털경제법제⑨

# 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裴大憲

한국법제연구원



# 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Review for Systematization and Interrelationship  
amo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related Acts

研究者 : 裴大憲(계명대 법학부 교수)  
Dae-Heon Bae

2001.11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제 1 장 서 언 .....	5
제 2 장 전자거래와 정보통신망(인터넷) 관련정책 구조의 관계 .....	7
제 3 장 전자거래 관련 법규내용의 검토 .....	11
제 1 절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 .....	11
1. 전자거래를 명시한 관련규정 .....	11
2. 각 규정내용의 검토 .....	13
3. 소 결 .....	17
제 2 절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18
1. 전자문서·전자서명을 규정한 법률 .....	18
2. 각 규정내용의 검토 .....	23
3. 전자서명의 활용에 관한 검토 .....	29
제 3 절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 .....	31
1. 개별법률규정 .....	31
2. 법률규정의 검토 .....	35
제 4 절 소비자의 보호 .....	37
1. 개별법률규정 .....	38
2. 법률내용의 검토 .....	41
3.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	44
제 5 절 개인정보의 보호 .....	45
1. 개별법률규정 .....	46
2. 법률규정의 검토 .....	52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검토 .....	55
제 6 절 기술 및 지적재산의 보호 .....	57
1. 개별법률규정 .....	57
2. 법률규정의 검토 .....	59
3. 새로운 대상의 보호논의 .....	62
제 7 절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의 확대적용 .....	63
1. 개별법률규정 .....	63
2. 법률규정의 검토 .....	65
제 4 장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한 몇 가지 기준 .....	67
제 1 절 정보·전자문서 등의 민사법예의 접근 .....	67
제 2 절 국제적인 규범체계와의 조화와 입법 .....	71
제 3 절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73
제 4 절 계약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편 .....	75
제 5 절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	77
제 5 장 요약 및 결어 .....	81
참고문헌 .....	85

## 제1장 서 언

디지털 혁명으로 온통 세상의 일이 급변하고 있다. 일상에서 行態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한 거래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의 틀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종래 산업사회의 구조에서 거래법의 논의는 거래의 신속·안전을 피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에 집중되었다. 이제 거래는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인 인터넷의 속도만큼 빨라져 신속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거래의 안전은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정보통신망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로부터 빚어지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자거래는 산업사회에서 다져진 신용사회의 사회적 기반 위에 거래의 안전을 추구하고야 할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혼동과 非對面에서 빚어지는 여건의 변화로부터 가상공간상 거래법은 새롭게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대상을 지니게 되었다.

정보사회를 이끌어내는 패러다임 속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 이용자의 확충은 정보화의 하드웨어적 프로그램의 전개에 해당한다. 그 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거래(또는 전자상거래)는 최종적으로 실제 생활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비록 새로운 형태라 할지라도 거래가 행하여지는 실체를 현행 거래법의 규범의 틀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거래의 실현이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집행되고 이를 활성화할 때, 이러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법규범의 전반을 분석·검토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는 일은 정보사회의 초입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 가운데 하나다.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법률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별 법률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서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피하는 미시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전자거래라는 새로운 거래형태는 종래의 산업사회의 거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법률로써 정보사회에서의 의도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오히려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법규범의 전반을 분석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전자거래의 법적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거래의 규범적 기초와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호간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법리적 체계를 이끌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 전자거래의 전반에 걸쳐 관련된 내용을 전자거래의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로부터 파악하고, 거간에 전자거래의 장애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끌어내어 논의의 단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거래 관련 법제의 정비와 그 체계화를 피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가지고 있으나,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연구대상인 전자거래관련법상의 용어의 적합성, 소비자보호와 약관규제, 디지털정보의 유통과 그 규율 및 통신판매와 전자거래 등을 살펴보는 개별연구과제와<sup>1)</sup> 세부내용의 검토에서 중복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부주제의 개별연구를 각론으로 상정할 때, 전자거래관련 법률의 상호관계분석 및 이의 체계화라는 총론적인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목적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전자거래관련법률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자거래의 법적 기반구축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살펴보았고, 전자거래의 당사자 측면에서 거래의 안전,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법률을 중심으로 개별법률 상호관계를 분석·종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명시하여 이를 검토하는 연구방법을 채용하였고, 그 대상을 국내법에 한정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였고, 국내법의 체계화를 위한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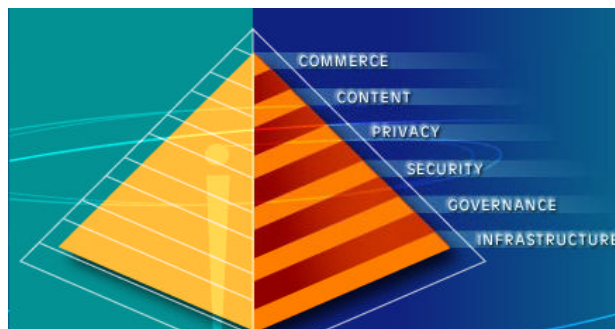
1) 전자거래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따른 세부과제는 “전자거래 관련 법률용어 개념 정립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노태악 판사), “전자거래와 관련한 약관규제법의 정비방안”(김동훈 교수), “디지털 정보거래의 의의 및 규율방안”(오병철 교수) 및 “전자거래 관련 방문 판매법의 적용과 한계”(윤주희 연구원)에 관한 연구이다.



## 제 2 장 전자거래와 정보통신망(인터넷) 관련정책 구조의 관계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여러 법률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체계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거래가 전통적인 거래와 구별되는 새로운 거래형태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상 사이버물(또는 점포)을 개설하여 거래가 행하여지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비자(이용자)가 이에 접속하여 거래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全 過程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는 쟁점이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어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급변하는 전자거래의 기술적, 규범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흠결이 있거나 새롭게 보충하여야 하는 개별 국내법의 규정내용을 국제적 논의에 따른 새로운 안목에서 고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업모델이 시장에 등장하거나 제시되었을 때 이러한 영업방식이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적합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분석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기술, 산업정책, 권리보호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정부의 각 부처별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집행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법률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는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살펴보는 법률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화로부터 전자거래의 진전에 따른 규범적 체계화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아래의 그림은 인터넷의 이용과 발전에 따른 각 단계별 정책·법률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구획하여 정리하고 있다.



출처: Global Internet Project <[www.gip.org](http://www.gip.org)>

제1단계(infrastructure)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인터넷이용자 확충 등이 주요한 정책수립·집행에 있어서 주요한 논의대상이다. 제2단계(governance)는 도메인이름 정책, 주소공간 할당정책 및 표준화 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제3단계(security)는 안전성확보로서 공개키기반구조(PKI), 전자서명, 정보통신 기반보호 및 사이버테러 등이 주요논제로 다루어진다. 제4단계(privacy)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부터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가일층 강화된다. 제5단계(contents)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스팸메일의 방지대책, 有害 프로그램차단 등 콘텐츠의 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제6단계(commerce)에 전자상거래로부터 편익을 얻지만, 여전히 소비자보호문제, 관할의 문제, 과세의 문제 등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섯 단계를 국내의 사정에 비추어 다시 정리하면, 제1단계-제2단계는 정보화의 기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상위의 전자거래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토대로서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이끌어내는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확산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 정보통신부와 산하 관련기관은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도메인이름 체계의 바탕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기술적 요건을 강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단계-제4단계는 前 단계의 구축에 따른 가상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정보전달과정에서 빚어지는 정보화의 역기능(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 전자거래에 있어서 규범적 기반형성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 완전하게 규범적 체계를 완비하여야 후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의 규범적 체계가 구체화되어야 다음 단계에서 전자거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의 이 부분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제6단계는 정보사회의 사회적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최상위 단계로서, 전자거래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정비된 법적 체계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국내법을 각 단계를 돌아볼 때, 위의 6 段階를 명확하게 구획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상

공간상 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보호의 법률체계(예컨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에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단계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중간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자거래 기반구축의 확충, 가상공간상 신뢰성·안정성 확보, 공공부문의 전자거래의 촉진 및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확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및 재정경제부 등 전자거래 관련부처에 의하여 마련된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종합대책의<sup>2)</sup> 중점분야를 논의의 취지에 터잡아 정리할 수 있다.

i) 전자거래의 기반구축의 확충에 있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완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추진,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자거래 물류기반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산화추진에관한법률, 정보격차해소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이들 법률 중에서 앞의 세 개의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ii) 가상공간상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전자문서의 위조·변조방지, 개인정보의 보호 및 해킹 등으로부터 시스템의 보호를 중요한 항목으로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특히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외에 소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앞의 다섯 개의 법률은 전자거래의 규범적 기반에 해당하는 법규·기술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법률은 또한 소비자(이용자)보호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이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iii)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있어서 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확산 지원이 주된 정책내용이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 외에 중

2) 한국전산원, 2001 인터넷백서, 2001, 114쪽 이하.

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외에 공공부문의 전자거래의 촉진에 있어서 정부의 입찰 계약의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을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외에 대외무역법을 들 수 있다.

iv) 그밖에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기존법률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여신금융전문업법,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저작권법 등이 있다.

## 제 3 장 전자거래 관련 법규내용의 검토

### 제 1 절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

인터넷이라는 개방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종래의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인터넷상 거래는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자 상호간 대면하지 아니한 채 거래가 행하여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통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통일되지 못한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우선 전자거래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비자보호법,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법 등이다.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거래방법, 거래대상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사인간의 거래(C2C)·상인과 사인(B2C)의 거래, 국내거래·무역거래를 통칭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정의가 전자거래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이하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거래의 법적 개념과 이들 법률규정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 1. 전자거래를 명시한 관련규정

##### (1)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 (정의) 4.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2) 소비자보호법

제 10 조 (거래의 적정화)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대외무역법

제 2 조 (정의)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4)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4 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 .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제 6 조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역전시회의 개최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계의 개발 및 운영
4. 기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3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5. "전자상거래"라 함은 공동의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화한 상업적인 거래를 말한다.

## 2. 각 규정내용의 검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자거래는 특정한 법률 하나에 바탕을 두어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그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국내의 전자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법률은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와 관련된 다른 법률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이다. 한편, 전자거래의 본질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을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와 법적 용어·정의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내의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거래내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구축과 관련되어 있다. 前者의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지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전자거래가 재화·용역을 거래대상으로 한정된 반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통상의 전자거래 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이외에 정보 등의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거래 이외에 대외무역에 대하여도 이 법률이 적용되느냐는 점이다.

둘째, 거래기반의 구축에 관한 규정은 거래내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거래의 실제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첫 번째의 것과 완전히 결별하여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하여 첫 번째의 것과 상호관련 되어 있다.

(1) 전자거래기본법·대외무역법상 거래대상의 삼이점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의 거래대상을 재화와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재화·용역 이외에 정보가 주요한 전자거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용계약의 법적 논의가 아주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가 아직 거래대상으로서 사법(민법)의 규정 내에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실거래계에서 거래되는 대상이라는 실체를 파악할 때, 정보를 실제법상 거래대상으로 포섭하여 이를 전자거래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제2조 1호에서 무역의 대상에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자거래기본법 보다 한 걸음 앞서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②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위의 두 가지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세 번째의 것은 영상물(예컨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및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sup>3)</sup>

이러한 무체물(intangible things)이라 함은 종래 무역의 대상이었던 물품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물품(유체물)과 달리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아니하였지만, 재산적 가치는 가지는 사적 재산권의 중요한 보호대상이다.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논의대

3) 산업자원부고시(2001.4.2) 대외무역관리규정제(2001-39호) 제1-0-2조의3.



상은 발명·실용신안·의창·상표에 관한 법적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과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저작권법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은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의 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위에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현행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일 수 있지만, 아직 보호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철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상이 많다. 아무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향후 전자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국제적인 보호규범을 마련하거나 각국의 보호규범의 마련에 있어서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무역거래는 주로 물품(유체물)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물품(유체물)은 전자무역을 활성화되어도 여전히 중요한 수출입의 거래 품목이지만,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디지털 콘텐츠는 국제적 온라인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IT기술의 발달로 얻어진 S/W 등 디지털 콘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개정 대외무역법에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온라인거래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지식집약산업인 디지털 콘텐츠는, 물품의 국외이동만을 주된 수출품목으로 삼아 무역거래를 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게 다루지 아니하였다. 디지털 콘텐츠를 무역거래로 삼는 자는 이를 물품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종전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디지털 콘텐츠를 무역의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당해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등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여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은 적용범위를 모든 거래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사인)간의 거래, 상인과 상인, 상인과 개인 및 정부와 상인 등의 거래

에도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 아주 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은 순수한 사법상의 거래 외에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거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사법에 한정된 성격을 띤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은 단순히 상거래 외에 정부가 사인을 상대로 구매계약(입찰)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직접 적용됨으로써 공법·사법의 경계 없이 가상공간상 거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도 규율한다고 보여진다. 법체계라는 점에서 검토하면, 전자거래기본법은 가상공간상 거래의 기본법의 역할을 맡아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개별적인 전자거래는 이 법률의 법적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을 해석하여 적용된다. 그렇다면, 현행 방문판매법 중 통신판매의 정의규정을 비롯한 통신판매에 관한 모든 규정은 이에 합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도 같은 취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의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가상공간상 거래되는 모든 거래를 포섭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거래의 계약법적 체계를 세우거나 전자상거래를 진흥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5장 소비자보호를 규정한 점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토할 때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규범적 지위를 가지는 것 보다 오히려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전자거래진흥에 관한 법률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띠려면 오히려 민·상법의 규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전자계약에 관한 규범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자거래에 있어서 실제 적용되는 실제법상 규범을 담아낼 수도 있다.

## (2) 거래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전자거래의 법적 개념

정보화촉진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으로서 전자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정의도 대외무역법의 규정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

하는 무역거래를 전자무역거래라고 규정하였다. 즉 인터넷 등의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연계하여 검토하면, 거래기반의 구축에 있어서도 정보통신망이란 사인간의 전자상거래 외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자거래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상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 정의할 때, 모든 거래는 국가정보화의 추진계획 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화추진이 국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정보화의 추진이 민간자율에 맡겨질 때까지 국가의 정책적 부담은 가중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의 실제법적 성질을 떠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 및 구현에 따르는 방침적 규정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3. 소 결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볼 때, 개별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거래의 실체를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아닌한 내용으로 입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라는 내용에서 거래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법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자거래의 실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써 거래의 의사표시를 송·수신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 등의 이용이 전자거래기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이를 전자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전자거래를 새롭게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피하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해석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거래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해석상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 규정에 쫓을 경우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제 2 절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개별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표준화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전자서명에 관한 규정과 개방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법률에 정하고 이에 따르는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인터넷 등의 완전 개방형의 정보통신망에서 거래자 상호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경우의 관련내용을 규정하였다.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실제 전자문서 등의 활용 등을 개관하면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발전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사정을 돌아볼 때, 두 가지 형태의 전자문서 등이 이용되고 있다. 전자는 실거래계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반면에 후자는 새롭게 소개되어 이용활성화를 피하고 있지만, 그 기술개발이 나날이 새로워져 논의되는 기술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등의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 주된 논의대상은 후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자문서 등에 관한 두 가지의 거래방식이 공존하는 실거래계에서 이들에 관한 각종의 법률규정의 내용이 각 법률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법규내용의 인식과 그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에 관한 규정내용을 일별하고,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전자문서·전자서명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 1. 전자문서·전자서명을 규정한 법률

#### (1)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3.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

터"라 한다) 상호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4.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 . .

제 8 조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의 행위를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2)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동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제13조 (전자문서의 형식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로 본다.

제14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①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상에 전자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

제16조 (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 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3) 산업기술기반조설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3.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라 한다) 상호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4.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제 8 조 (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의 행위를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4) 외국환거래법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 (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5)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정의)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제48조의4 (전자문서등의 효력) ①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자망을 이용하여 송인·신청·신고 또는 등록등(이하 "송인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법령(이하 "물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자망을 이용하여 송인등을 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물류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송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7)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

#### (8) 전자서명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9) 특허법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0)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각 규정내용의 검토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의거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전자문서란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에 관하여 전자문서의 명의인의 표시와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문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자문서·전자서명은 EDI방식을 이용하는 폐쇄된 정보통신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은 그 구축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만, 높은 보안수준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인터넷 등의 개방형 정보통신망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다. 개방형 정보통신망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반면에 정보의 보안성에 있어서 대단히 취약한 약점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방형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기술적·법적으로 구체적인 강구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를 규율한다. 여기에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정의한 내용 보다 그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정의는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하는 정보로만 규정함으로써 전자거래에 있어서 이용되는 전자문서는 표준화된 형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현된다. 전자문서에 관한 정의와 함께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전자거래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전자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대상이 전자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전자서명은 현행법상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서명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여러 법률에서 전자문서·전자서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거래에서 논의되는 주된 대상은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 서로 주고받는 전자문서와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전자서명이다. 이러한 것은 EDI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상 직접 주고받는 메시지의 보안확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법률은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으로 좁혀진다.

#### (1)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 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sup>4)</sup> 전자서명법상 디지털서명에 관한 정의는 미국 Utah주의 디지털서명법의 입법취지를

4) 전자서명법 제2조 2호.

참조하였고, 1997년 8월 시행된 독일의 디지털서명법상 개념정의와 유사하다.<sup>5)</sup> 여기에서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이는 실제 디지털서명을 말한다).<sup>6)</sup> 이러한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명을 위한 개인키와 공개키가 있어야 하는데<sup>7)</sup> 법률에서는 이를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 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고,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sup>8)</sup>

법률상 전자서명은 법정명칭에 불과하고 실체는 법률규정 전체를 검토할 때 디지털서명을 지칭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 등은 디지털서명에 근거한 규정이다. 이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서명이 디지털서명에 한정하고 있다. 그 명칭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인식되었던 용어의 친숙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서명이라는 명칭 대신에 전자서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는 현실적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디지털서명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이 법에 담아 입법하였지만, 디지털서명을 작성하는 기술내용 예컨대, X.509라는 알고리즘을 명시한 Utah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 (2)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서명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한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 이 내용은 위의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5) §2 Begriffsbestimmungen(1) Eine digitale Signatur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 mit einem privaten Signaturschlüssel erzeugtes Siegel zu digitalen Daten, das mit Hilfe eines zugehörigen öffentlichen Schlüssels, der mit einem Signaturschlüssel-Zertifikat einer Zertifizierungsstelle oder der Behörde nach §3 versehen ist, den Inhaber des Signaturschlüssels und die Unverfälschtheit der Daten erkennen läßt.

6) 전자서명법 제2조 13호.

7)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5호).

8) 전자서명법 제2조 3호, 4호.

전자서명(디지털서명)을 지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디지털서명이 아니더라도 수기서명의 기능을 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이는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 등의 이용으로부터 등장된 가상공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정보통신망 상의 보안성확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7호는 인증기관을 규정하였고, 동 법 제2조 8호에 공인인증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인증기관을 이원화하고 있음을 나타내 것이다. 전자의 인증기관(비공인인증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하며, 후자의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기관도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sup>9)</sup>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한 전자서명이란 어떠한 종류의 전자서명을 말하는가.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과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서명을 함께 고찰할 때, 그 종류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받지 아니한 디지털서명 이외의 전자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통상의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디지털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디지털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디지털서명 등이다.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제3자에 의하여 변조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만을 밝힐 수 있다면, 실거래계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 또는 디지털서명이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수긍이 된다.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용상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추단된다. 이 문제는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어느 형태로든 실거래에서 일반형태가 안착될 때까지 이용자(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9)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

## (3)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서명에 관한 검토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디지털서명)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즉,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디지털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sup>10)</sup> 위와 같은 전자서명은 디지털서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sup>11)</sup>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sup>12)</sup>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작성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sup>12)</sup> 전자서명법과 일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서명에 관하여 주의하여 살펴볼 점은 위와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전자서명은 전자거래기본법상 모든 전자서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적 거래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형태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거래당사자는 당해 법률상 효력을 얻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즉, 디지털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디지털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가지고 거래한 경우에 사용된 전자문서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sup>13)</sup> 이는 전자문서를 통상의 종이문서와 구별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직접 반영한

10)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11) 전자서명법 제3조 2항.

12)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13)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7조.

것으로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법·제도의 강구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전자문서가 일반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결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까지 추정한다거나 이를 간주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이러한 무결성의 전자문서임을 스스로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한 전자서명이 전자서명법에 정한 디지털서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받은 디지털서명된 경우에 한정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전자문서 효력은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경우에 즉 디지털서명을 사용하였지만,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단순한 전자서명만을 사용한 경우 등에 거래 당사자간 다툼이 생겼다면, 거래당사자는 전자서명이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전자문서의 효력으로부터 문서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무결성까지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비공인인증기관의 신뢰성 정도 또는 통상의 전자서명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디지털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적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안전성이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에서 확보되었을 경우에(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는) 거래당사자가 여러 가지 전자서명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전자서명의 이용자 측면에서 검토할 때에, 초기의 전자서명의 이용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상정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상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이라도 디지털서명생성키 등의 교부방법 등에 즉, 공인인증기관이 생성하지 아니한 디지털서명키를 가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인증기관이 인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인증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가입자가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진정성 추정)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만들어 디지털서명 비밀키를 사용하거나,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확보한 디지털서명 비밀키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이라는 대외적인 기

관명칭만을 인식한 채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반하여, 위의 두 가지 사이의 법적 효력이 달라짐을 알지 못한다. 우선,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가입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이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숙고할 때, 전자거래기본법에 정한 전자서명의 규정내용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과 완전히 분리·독립적인 형편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한, 거래하는 이용자(소비자)의 측면에서 하나의 법규내용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sup>14)</sup> 그런데 최근에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개정시안 제11조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에 정한 내용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의를 취지와 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sup>15)</sup>

### 3. 전자서명의 활용에 관한 검토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상의 그것과 구별된다. 전자는 EDI방식을 채용한 것인 반면에, 후자는 PKI 또는 기술중립적 방식(개정시안에 따를 때)에 의한 전자서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법률은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개념과 법적 효과의 논의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자서명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자서명이 전자거래에서 활용되어 실제 전자서명이 활성화되려면 특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전자서명)에 한정하는 실무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또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14)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516호(1999/10), 169쪽.

15) 이에 대하여 <[www.ecommerce.go.kr/viewfolder/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hwp](http://www.ecommerce.go.kr/viewfolder/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hwp)> 참조.

것이다. 이들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에도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실무상의 검토는 금융거래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에서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다.<sup>16)</sup> 그러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 그밖에 법령에 정한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2항에<sup>17)</sup> 정한 대상 이외에는 모든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이 요청된다. 그런데 전자적 환경에서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및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전자서명법상 인증서·전자서명은 거래당사자를 확인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전자서명법상 인증은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충분하므로 위의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이 요구되는 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실명확인방법에 외에 인증서에 의한 실명확인의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금융실명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제3조.

17)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 . .



### 제 3 절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

전통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달에 있어서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 1항)을 규정하였고, 격지자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31조). 그런데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화자와 격지자의 구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즉시(real time)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따라서 문제는 어느 시점에 의사표시의 통지가 있고, 어느 시점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냐는 것이다. 종래 격지자간 계약체결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 근본취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계약당사자가 행하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꾀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상 계약체결에 있어서 대화자·격지자간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체결의 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할 때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냐는 점이다. 대화자·격지자의 구별은 거리·공간의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전화나 신호에 의한 의사표시는 거리와 무관하게 대화자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18)</sup> 이와 함께 다루어지는 문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결함으로 의사표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1. 개별법률규정

##### (1)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8 조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등)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의 행위를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18) 권윤직/박영식, 주해민법(II), 박영사, 1999, 612~613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2)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등과 승인등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8 조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의 행위를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4)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5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전담사업자의 전자

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인등은 전달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 (6) 전자거래기본법

제 9 조 (송·수신시기 및 장소)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 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

(7)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①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 전에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 2. 법률규정의 검토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관한 현행 법률은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표현방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도달시점(수신시기)에 관한 법규내용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의 전자문서·전자서명에 있어서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이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송·수신에 관한 규정내용은 이와는 다르다.

여기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자거래기본법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에 기한 계약체결을 명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행 민법상 대화자간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도 이때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격지자간 거래의 경우에 민법 제531조에 의하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거래를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하는 것과 민법규정에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논리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우선은 전자거래를 대화자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느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화자간 거래란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민법은 이를 von Person zu Person으로 규정하면서<sup>20)</sup>,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정약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21)</sup> 이에 관하여 현행 민법상 대화자간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서로 상대방을 확인하며 통

19)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규정된 송·수신의 개념은 사법상 발신·도달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문서를 읽을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되지 않는 한, 거의 같은 뜻으로 새길 수 있다(同旨,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2001/5호, 12쪽).

20) § 147 Abs. 1 BGB.

21) Soergel-Wolf, Kommentar des BGB(12. Aufl.), § 147 Rz.3.

화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 “현대적 법률 행위에 있어서 사법과 기타 법규의 문서규정의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den modernen Rechtsgeschäftsverkehr, Stand 6. Sep. 2000)<sup>22)</sup>의 내용 가운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대화자의 계약체결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현행 BGB 제147조 제1항에는 “대화자에게 행하여진 청약에 대한 승낙은 즉시 행하여져야 한다. 전화로 행한 직접 청약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문의 내용 중 “전화로”를 “전화 또는 기타 기술적 설비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기타 기술적 설비를 이용한 경우는 비디오회의(Videokonferenzen) 또는 채트(Chats)를 말한다. 그렇지만, e-mail의 전달과 같이 von Person zu Person이라는 의사전달의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sup>23)</sup>

여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한 다 함은 격지자간의 계약체결로 보아야 한다. 이는 직접 상대방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과 다르다. 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한 전자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확인·계약내용의 변경 여부 등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전화로 의사표시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송·수신할 때, 특별히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게 때에 수신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즉시에 수신하게 됨으로써 종래 격지자간의 계약체결에 관한 민법 제531조의 적용은 특별히 고려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정보통신망상 의사표시의 도달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sup>24)</sup>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민법의 일반원

22)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www.bmj.bund.de/ggv/bgbregel.pdf](http://www.bmj.bund.de/ggv/bgbregel.pdf)> 참조.

23) BMJ, *Entwurf*, S.41.

24) 노태약, “전자거래 관련 법률용어의 개념정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29쪽 참조.

칙에 좇아 해석하여야 한다. 도달주의의 원칙을 수용하자는 논거는 종래 격지자 사이의 계약체결에서 논의되었던 사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의 사정과 비교한 후 그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를 법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런 논거에 따라 민법 개정 가안에서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송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수용하였다.<sup>25)</sup>

나아가, 이는 민법 제5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상 종래 격지자간의 계약체결과 구별된다. 민법상 규정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전자거래기본법에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이에 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민법개정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하여는 민법개정 가안에 담지 아니하였다.

#### 제 4 절 소비자의 보호

가상공간상 물품(또는 용역)의 거래 또는 정보이용에 따른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의 보호가 통상의 대면거래의 경우 보다 열악한 사정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가상공간상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계약체결 등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의사표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래 이용하던 의사표시의 전달매체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산업사회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정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법적 기반 위에서 안착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는 Off-Line에 적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On-Line 상의 거래와는 친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보충되는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자거래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전자거래에서 빚어진 소비자피해가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률(예컨대, 전자거래기본법 등)

25) 법무부(인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民法改正(假案), 2001/4, 20쪽.

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지만, 실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남기고 있다. 아래에서는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법률 중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규범체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1. 개별법률규정

### (1) 소비자보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29조 (소비자 보호의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제30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등) ①정부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전자거래에 관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전자거래당사자등과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비자 피해의 구제) ①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전자거래에 이를 적용한다.

제32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전자거래당사자 등과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6.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장 통신판매(제17조-제27조)

제17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18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제19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상품인도등)

제20조 (상품인도서등의 송부등)

제21조 (청약의 철회)

제22조 (철회권행사의 효과)

제23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제24조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 등)
- 제25조 (금지행위)
- 제26조 (영업의 정지)
- 제27조 (휴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 2. 법률내용의 검토

소비자보호법은 Off-Line/On-Line에서의 거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통상적인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거래계에서 빚어지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2001년 3월 개정)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대상은 물품·용역을 규정하였을 뿐 가상공간상 정보(무체물)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형태인 전자거래를 법률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전자거래의 중요한 대상인 정보이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전자거래의 대상을 물품·용역에 대한 거래로 한정하는 좁은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거래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대상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정보를 들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에서 이를 전자거래의 대상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용어에 있어서 전자거래 기본법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고 규정(법 제2조 4호)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보호법은 이를 물품 및 용역으로(법 제3조) 규정하고 있다. 양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같은 것(goods and/or service)이기는 하지만, 법률용어가 어느 하나에 일치되어야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에서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3장 통신판매에 관한 여러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형태를 포섭하여 실거래시 적

용된다. 그런데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이라는 법률용어로부터 전자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하는 전자거래는 엄밀히 말하면 종래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통신판매방법과 구별된다. 따라서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와 전자거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자거래는 종래의 통신판매와 구별되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소비자보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방문판매법 가운데 통신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의 규정을 가지고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전자거래에 특유한 거래내용인 전자문서의 이용, 사이버몰을 운영, 전자거래의 소비자피해구제방법 등을 포괄하는 입법이 요청된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호는 전자거래의 초기단계에서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즉, 새로운 거래형태가 실거래계에 전개되어 전자거래를 확산하려면, 법규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법적 확신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에서 약관법이라 함)이 문언상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자거래의 대부분이 전자약관의 이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약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상공간 상에서 거래에서 이용되는 전자약관을 현행 약관법상 약관으로 보아 이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현재 전자거래와 관련되어 표준약관으로 소개되고 있는 약관 가운데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전자금융표준약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표준약관은 그 동안 거래계에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의 다름을 막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므로 당해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약관·지침이다. 정보이용계약(mass-market license)체결에 적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보이용계약은 새로운 계약형태

로서 계약법적 내용 및 지적재산권의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법적 검토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립 및 계약내용의 효력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저작권자(이용허락자)보호에 치중한 이용약관은 소비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들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입법론적 방법으로 외국의 논의(예컨대,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는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보호될 정보의 範圍劃定, 기술의 가치중립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상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정보에 관한 경제적 가치실현만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법을 확대적용하려는 거래계의 새로운 움직임은 소비자보호라는 규범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할 가치 있는 새로운 대상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가 열악한 사정으로 빠지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런 대상을 외면하게 된다. 한편, 소비자보호가 주된 논의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방에 편중된 보호방법을 강구한다면, 정보제공자(이용허락자)와 소비자(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깨어져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보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소비자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相補的 關係에서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면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법률 제30조 제1항은 소비자보호법 제11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항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내용은 소비자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내용과 같다.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의 내용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sup>26)</sup> 또한 같은 법 제32조는 개정전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sup>27)</sup> 규정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논의로부터 전자거래기본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상 규정내용과 같은 것이거나 폐지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9조의 설치하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언적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함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 3.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이다. 소비자보호법은 Off-Line/On-Line에서 거래하는 모든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통신판매의 한 종류로 전자거래를 분류할 때, 방문판매법은 가상공간상 거래에서 벗어지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은 가상공간에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전한 거래질서와 전자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몇 개의 조문을 설치하였지만, 그 규정내용은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나 전자거래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실제에 비추어 볼 때에 규정설치의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개별법규의 상호관계를 비추어 볼 때,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

26)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27) (개정전) 소비자보호법 제17조 ①사업자 및 사업단체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998년 12월 삭제).

비자보호는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Off-Line/On-Line상의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하지 못하는 한, 전자거래를 종래 Off-Line상의 거래와 분리·독립시켜 물품(또는 재화), 용역 및 정보 등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소비자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거는 종래의 소비자보호법은 산업사회의 법체계 하의 대면거래가 주된 논의대상으로 도출되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사회의 전자거래가 비대면거래라는 거래의 형태로 그 차이를 드러냄에 따라(후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종래 전통적인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비교할 때 아직은 열악한 사정에 머물러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전자거래시의 소비자와 전통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사이에 차등 없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부터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소비자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제 5 절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현행법상 정의로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sup>28)</sup>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란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심신의 상태, 사회경력, 경제관계, 생활·신분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그 내용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특정한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속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적

2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6호.

인 특성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없지만, 개인에 관련된 정보이다. 전자는 성명, 초상,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그것만을 가지고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금융정보, 의료정보, 거래정보 등 개별적인 것만을 가지고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자의 내용과 결합할 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개념적으로 양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 전자의 내용이 결합된 경우에 그것의 활용가치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게 되므로 양자가 함께 결합되어 이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확립시키고 또한 이른바 개인정보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승인하고 있다. 실무상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주체에 대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지배권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언제,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넘겨지고 이용되는지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기정보수집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 정정요구권 등을 내용으로 논의된다. 이 기본권의 효력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미친다. 이러한 기본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중에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행사될 수 있다. 이들 내용이 개별 법률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개별법률규정

###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장 개인정보의 보호(제22조-제40조)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2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 (손해배상)

제33조-제40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 (3)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거래당사자등"이라 한다)는 그 전자거래 또는 의무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의 당사자

2. 인증기관

3.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의무를 제공하는 자

②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화 또는 의무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자거래당사자등은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당사자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전자서명법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공인인증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청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청정청구등)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외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의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중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 명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 .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 .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 .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 . .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 .

(8)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5 (정보유통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정보화촉진법

제 5 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9. 개인정보 및 지식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

2. 법률규정의 검토

컴퓨터를 정보처리체계로 활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서, 서구의 선진국은 사회개혁과 확대된 사회복지를 구현을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복지정책의 수립·집행에 활용하였다. 이 때 인구조사에서 얻어진 개인에 관한 각종의 자료를 저장·관리하면서 정보처리(EDPS)라는 기능에 주된 관심을 모았을 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국가는 이들 자료를 관리·통제하고, 개인은 자신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거대한 중앙처리장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국가의 세부적 사무에 이용되는 한편, 소형컴퓨터의 개발로부터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공유체제로 이끌리어 악용될 수 있는 여건에 빠져들게 되었다. 각국 정부는 정보관리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논의하기 시작한 반면, 국민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權利化와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의 승격을 주장하였다. PC 보급이 확대된 1980년대에 개인은 정보제공의 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의 각 분야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정보통신망의 이용확산과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악용됨으로써 이전 보다 훨씬 심각하여 강화된 보호의 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현행 개인정보의 보호규정은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터잡아 마련되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정내용이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가상공간상 정보수집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마련된 경우, 개별법의 입법취지에 한정한 법적 효력을 피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우, 정보통신망이 이용·확산되기 전에 제정된 경우, 전자거래에서 빚어지는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경우,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한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위에서 나열한 개인정보의 보호규정은 개별법상 입법취지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Off-Line/On-Line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매체가 다르다는 점 이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 다만, 개별법의 입법취지에 기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보호규정 외에 특별규정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영역을 기준으로 공공부문·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은 정보화기반구축, 전자거래, 금융거래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때, 공공부문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규정 가운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규정이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포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률의 규정들은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을 수용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정보통신망 이용·확산에 따라 가일층 강화되어야 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이는 OECD에서 채택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원칙에 좇아 국제적 기준을 수용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대상·범위에 있어서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등과 관련한 적용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본질적인 취지가 같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수집절차·처리방법 및 처리정보의 이용 등에 있어서 각각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개인정보의 수집·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므로 전자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적 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

별법률과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정보통신망법이다. 이 법률의 규정 중 개인정보 규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확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에 부응하여 법률의 개정 전에 이미 마련되어 시행하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당사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sup>29)</sup> 말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다. 이 법률에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당사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일련의 절차·처리·보관 등이 같다는 점 등을 주안점으로 살펴볼 때에,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을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근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는 대상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규범의 형식논리에 따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실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내용과 같다.

생각전대,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내용에 좇아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있어서 정보통

29) 정보통신망법 제2조 3호.



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상대방 사이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sup>30)</sup>

###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검토

최근 들어 Off-Line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역시 대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Off-Line/On-Line의 구별 없이 개인정보보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사정에 빠져 있다. 실제 전 이용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대형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 Off-Line과 On-Line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르는 문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실제 개인정보의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On-Line이 아닌 매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On-Line에 악용함으로써 Off-Line/On-Line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동기소에서 타인의 부동산동기부를 열람하면서 얻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상 전자거래의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우편물에 표시됨으로써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사례, 별 다른 관심 없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중에 이를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Off-Line을 통하여 거래되던 산업사회에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아도 될 것이었지만, 이들 정보를 가지고 곧바로 On-Line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악용하게

####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법 제5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 이외에 각 산업분야에서, 예컨대 금융분야,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의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On-Line상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규범의 체계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Off-Line/On-Line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포섭할 수 있는 규범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법 제58조에서 이에 관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의 전체적인 윤곽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로부터 검토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취약점을 띠고 있다. 그 위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개별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법규에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한 채 어떤 경우에 방침적 규정으로 보여질 만큼 규정한 내용이 허술한 경우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행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범이 당해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하여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띤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별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일반법의 성격을 띠게 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Off-Line/On-Line에 드러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의 규정을 빼어내어 Off-Line/On-Line를 연계하여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담아 일반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冒頭에 간단히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정보유통에 관한 실제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 6 절 기술 및 지적재산의 보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인터넷에 선보이고 이를 상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가 날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 법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처음에는 도메인 이름·상표권, 링크(link) 등에서 인터넷의 접속과 관련된 문제가 주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으나, 미국의 냅스터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 상호간에 화일을 주고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디지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다. 이 사례는, 디지털 녹음매체를 이용한 MP3 음악화일이 냅스터를 통하여 타인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용처럼 보이지만 불법적인 상업사용에 해당하느냐를 검토하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논의대상은 산업사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보호라는 현행법의 체계와 디지털 기술의 개발로 앞당겨지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정보공유라는 대립된 가치에 대한 다툼으로 집약될 수 있어 정보화와 관련된 규범적 관점에서 고찰할만한 대상이다.

### 1. 개별법률규정

#### (1) 특허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제29조 (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언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②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

(2) 저작권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6 조 (편집저작물) ①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 .

## 2. 법률규정의 검토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이란 컴퓨터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 또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종래 영업방법에 대하여 특허법에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권을 허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태도였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행하여지는 영업방법을 보호할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미국 특허청(USPTO)에서 허여했던 "뮤추얼펀드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및 회계를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데이터처리에 관한 프로그램"<sup>31)</sup>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특허권 허여를 확인하였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State Street Bank 사건 판결에서<sup>32)</sup>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권 부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영업방법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2심 법원은 종래의 논의와는 다르게 전자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처리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지불수단, 안전성확보, 이용자(가입자) 중심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합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정보통신망 상 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31) 이는 "Data Processing System for Hub and Spoke Financial Service Configuration", US Patent No.5,193,056(March 9th, 1993)이다.

32)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47 USPQ 2d 1596(Fed. Cir. 1998).

특허출원이 집중되고 있다. 그 내용은 네트워크상 매매, 사이버쇼핑몰 금융 파생상품, 경매방식·역경매(reverse auction), 투자시스템, 전자화폐 등이다.

우리 특허청은 출원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사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2000/8). 그런데 특허법상 특허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특허실무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특허청이 마련하였던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에서 취하였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부여의 경우와 같은 해석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방법도 이런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업방법에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혁을 겪으며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발전의 현실에서 새롭게 등장한 영업방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발명의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석론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법에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sup>33)</sup>

데이터베이스란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집합물이다. 이는 어떤 응용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 둔 데이터의 집적을 말한다. 이에는 문헌·신문기사·특허자료·판례 등 정보를 검색할 때 이용되는 문헌 데이터베이스, 주식시세·산업통계·기

33) 특허청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영업방법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분류하여 출원인이 조기에 특허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2호 차목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 출원

상자료 등 수치정보를 가진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저작권법 제6조의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편집에 있어서 데이터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현행법상 보호영역 밖에 있다.

그 동안 여러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산업의 육성·진흥과 그 대상에 관한 법적 보호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1년 4월에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편집저작물과 편집물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편집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집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장의2를 신설하였고, 편집물의 보호는 편집물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5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였다.<sup>34)</sup> 이러한 규정의 신설은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EU지침, 이에 따른 EU국가 입법에 및 미국 연방의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참조하였다. 보호방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EU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규범의 틀이 마련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 즉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진흥 등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수요에 대한 중요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대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법의 보호영역 밖에 방치하게 될 경우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의 시행 및 미국의 컴퓨터정보거래법의 채택 논의와 이에 대한 국제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따른 설외적 법률마찰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대응방안으로 해석론상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에 관한 논의 및 관련내용의 입법론적 논의를 들 수 있다.

34)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안(설명자료)", 2001/4 참조.

### 3. 새로운 대상의 보호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정보이용의 활성화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정보 이용을 위하여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느슨한 법·제도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내용의 전개,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으로부터 노력으로부터 얻어질 것이다. 이에 정보화에 장애가 되는 현행법의 규정의 폐기, 정보의 질적 향상을 복돋는 법규의 마련함으로써 정보화의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된다. 산업사회의 경제적·규범적 기반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적 구조를 가지지 않는 한, 기술이 선도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법규범은 점진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신기술의 보급의 전파와 함께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이를 공급하려는 자에게는 종래보다 더 많은 노력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인터넷이용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이용자에게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때에 부가가치를 높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터넷 링크는 일반적인 자료검색방법으로 인터넷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용자가 아주 저렴한 가격(또는 무임승차의 방법)으로 인터넷상의 자료(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때에 정보사회를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제작자의 경제적 가치가 회수되지 않는 사정 하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기술로 개발되어 향상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높게 됨으로써 국내의 기술개발을 더욱 열악한 사정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훨씬 빨라지게 될 정보통신망은 외국의 우수한 데이터베이스에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제 7 절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의 확대적용

민간부문의 전자거래의 이송확산과 함께 정부의 전자조달 체제구축과 이에 따른 물품의 구매와 입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전자거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밖에 행정투명성확보와 정부의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전자거래의 공공부문으로의 확대적용은 그동안 전자정부의 구현과 함께 정보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추진경과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부부처간 이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한 체계적으로 마련된 방안 위에 정부·산업간의 전자조달업무 진행을 위하여 H/W와 S/W를 구축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G2B 시스템은 B2B의 경우 보다 규모, 내용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므로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산업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달 관련 물류체계라는 점이다.

아래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정부조달, 전자적 입찰·경매방법의 도입 및 물류체계 개선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을 살펴보고, 전자조달 체제구축과 이에 따르는 법규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 1. 개별법률규정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 민국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8 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up>35)</sup>

(2)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3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공고물 명할 수 있다.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⑤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물류현대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up>36)</sup>

2. 법률규정의 검토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법률 가운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기존의 Off-Line에 의한 경우 외에 전자적 환경에서도 입찰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하여 G2B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규에 담겨지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G2B에 대하여 행자

3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물류현대화 지원사업)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은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제품 및 원·부자재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물류현대화지원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지도·연수,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및 조달청 등의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개발 중에 있다.<sup>37)</sup> 정부는 국가 전자조달체계 구축 전략 수립, 조달관련업무 절차혁신, G2B관련 콘텐츠 및 전자서식의 표준화 및 조달단일창구 구축·정보화기반 구축을 피하고 있으며, 조달관련 물류체계의 개선, 수요기관의 내부업무 절차의 개선, 조달관련정보 일괄제공, 역경매·공동구매 등 민간 영업방법의 도입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G2B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G2B기반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조달관련 물류체계 개선과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이를 법규에 담아낼 때에 비로소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거래법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계약당사자로 하는 전자계약의 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확대하여 국가의 전자적 계약체결을 촉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된 영역의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결국 조달업체에 대하여 기업경쟁력의 제고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경비절감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경제촉진으로부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

37) 이에 관하여 상세히는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사업계획)”, 2001/5 참조.

## 제 4 장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한 몇 가지 기준

위에서 살펴본 7가지의 논의항목은 전자거래와 직접·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개별 법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가상공간상 전자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려면 전자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률이 일정한 체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규범적 기초 위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법률은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피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1990년 초에 들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대부분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전자거래의 활성화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에서 비롯된 국가전산화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입법적 조치는 현재 전자거래를 행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전인차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이다.

아래에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적 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몇 가지의 방향제시를 하며, 이로부터 개별법에 한정된 법익추구라는 응색함을 버리고 법률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보사회의 규범적 패러다임을 구체화할 수 있다.

### 제 1 절 정보·전자문서 등의 민사법예의 접근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규범의 기초가 여전히 산업사회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면, 법규범이 정보사회의 구현 또는 정보화에 대한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법의 보수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거래인 전자거래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규제적인 면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전자거래의 육성·진흥이라는 점이 강조될 때 비로소 정보사회에서 규범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정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다. 정보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그것에 대한 保護政策·公有政策은 각국의 산업·문화 등에 터잡은 입법정책이 반영되어 법규로 구체화될 때에 비로소 규범적 가치를 띠게 된다. 這間의 사정을 돌아볼 때, 컴퓨터의 폭넓은 활용 및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으로 인하여 정보의 확보에 주력하던 사회적 여건은 정보 그 자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가치를 띠는 정보는 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정보는 재화·용역 외에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때 디지털 정보를 사법상 보호객체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기반의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과 거래대상인 정보에 관하여 실거래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의 실체를 반영하여 규범적 의미를 새겨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대량으로 유통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대단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계약형태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낸 개발자(제공자)는 지적 산물의 이용에 대한 對價로 경제적 보상을 시장에서 구하고 있다. 전자는 계약법에서 검토되고, 후자는 지적재산권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왔다. 정보는 산업사회라는 사회적 기반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미 정보 자체가 재산법의 논의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이 현행법의 체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 상표 및 저작물로 표현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이제까지 실제공간에서 다루어졌으며, 단순한 정보라는 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로 보호되어 일반 민사법의 특별법 형태로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보가 전통적인 형태이든 전자적 형태이든지 불문하고, 정보통신기반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는지의 여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정보는 이를 담고 있는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contents)에 그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정보통신망의 전달매체를 이용하며, 무체물이라는 특성에 따

라 종래의 것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가상공간상 디지털 정보는 종래 일반 민사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거나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되지 못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형태로 구성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사법상 재산법의 법리를 기초하여 검토되고 있다.<sup>38)</sup>

정보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규범적 대상으로 판단할 때에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지적재산권법에 속하는 여러 법률을 들 수 있다. 이들 각 법률은 보호객체를 산업사회의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On-Line과 관련된 내용, 즉 On-Line과 관련된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을 띠고 있다. 예컨대, 저작권법을 살펴볼 때, 2000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On-Line상 저작물의 보호에 한 걸음 앞서 나아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2001년 저작권법 개정(안)에 편집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과, On-Line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On-Line상 저작권 등의 보호에 충실하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집물 등의 보호로 인하여 이들 정보를 이용하는 계약체결이 활발하게 행하여질 것을 상정할 때에 권리객체로서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사법의 규정으로 담아내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때에 이르렀다. 정보에 대한 보호·공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법상 일반적인 논의대

38) 디지털 정보를 전통적인 권리객체와 비교하여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논의대상	새로운 논의대상	비 고
거래대상	재화(유체물), 용역	정보, 지식재산	경제적 가치실현
계약형태	매 매	라이선스	계약법의 지배
이용기술	아날로그 기술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명
사회구조	산업사회	정보사회	다원화된 사회

상으로 아직 승격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현행법 가운데 전자거래의 대상을 규정한 법률 중에서 대외무역법을 제외한 법률에 무체물의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나라는 규범체계로 그 외형과 실질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선진국은 정보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법률로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법은 정보의 중요성을 특별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보호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법률은 대부분 규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와는 그 법규의 성질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행정규제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어 이를 규율하는 것은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막기 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이를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일은 정보사회로의 발전을 꾀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정보 자체를 거래되는 대상으로 다루는 규범적 근거 또는 법규를 마련하는 일은 정보사회로의 발전 도상에서 숙고하여야 할 것들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sup>39)</sup> 이 통일법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컴퓨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하여도 같은 수준의 컴퓨터정보를 보호하는 법규범을 요구할 것으로 추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현대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사법과 기타 법규의 문서규정의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소개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위의 내용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후 200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민사에 관한 법률인 민법전에 정보 및 전자문서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9) UCITA의 최근의 논의진행에 관하여 <[ucitaonline.com/scm.html](http://ucitaonline.com/scm.html)>; UCITA 최근 내용은 <[www.law.upenn.edu/bll/ulc/ucita/ucita01.ht](http://www.law.upenn.edu/bll/ulc/ucita/ucita01.ht)> 참조.



## 제 2 절 국제적인 규범체계와의 조화와 입법

전자거래는 물리적 의미에서 국경 없이 지구촌(global village)에서 정보통신망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통신망에 연결됨으로써 점차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거래가 증가하고 이로부터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한 국가와 한정된 거래가 On-Line/Off-Line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래에 관한 규범이 조화(harmonization)를 꾀하는 영역이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전자서명모델법이다. 이들 모델법은 아직은 법규범의 본질인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각국의 법규범에 스며들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내법의 체계를 세우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EU의 각종의 지침은 EU를 구성하는 각국의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국법을 개정토록 하고 있다. 개인 정보에 관한 OECD의 8개 원칙은 이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각국의 규범을 제정하는 기준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논의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EU·미국 사이의 논의로 결실을 맺은 소위 "Safe Harbor"에 대한 내용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이다. EU·미국 외의 각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인 규범들을 검토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 전자상거래모델법·전자서명모델법과 같이 UN·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것, ii) EU 지침과 같이 지역국가의 연합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iii)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제시하거나 규정한 법규범들이다. 첫 번째의 것은 법규범으로서 아직은 강제력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국이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것은 대부분 상호주의를 각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EU 국가들과 거래를 할 때에 자국에서의 보호정도를 동등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향력이 강하게 스며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전자거래에 관한 법규범의 성질은 자기규제(Self-Regulation)적인 반면에, EU의 지침은 정부규제(Government-Regulation)적이다. 예컨대,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살펴보면,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EU의 전자서명지침 및 미국의 연방전자서명법 등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무엇을 입법적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전자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널리 활용되면서 규범체계를 세우는 일로 뒷받침될 때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범체계는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화정책·전자거래의 활성화를 피하는 정책과 이들로부터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적 측면의 정책에 관한 규정들이다. 후자는 가능한 한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규제를 혁파하여야 하지만, 전자거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철저히 규율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자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함으로써 전자의 실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전자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여건에 비추어 판단할 때 규제적 측면의 강조보다는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 오히려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제는 행정적 지원에 바탕을 둔 造成的 內容을 담은 규범의 마련에 집중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거래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외에 규제적 측면을 동시에 규정하는 입법정책 하에 법률내용에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상세내용은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자거래의 여건과 국제적 규범의 논의에 대한 변화의 추이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제기구, 지역연합 및 미국이 규범화하거나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률의 규정내용은 산업발전을 이끌어내는 造成的 側面에서 정책방향을 담아내고,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내용은 기술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상 접근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전자거래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정보통신망에서 거래하는 당사자가 서로 대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거래내용을 송·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거래는 전자문서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법·제도적인 접근이다. 전자의 내용은 최근 들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후자에 대하여 각국은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로써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자서명의 방법에 대하여 초기에는 디지털서명의 방법을 취하였으나, 기술중립적 방법이 국제적으로 권고되면서 이미 법률을 제정했던 국가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신규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기술중립적 전자서명의 방법을 취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관하여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논의되어 마련되었고, 금년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 여부와 그 내용이 정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라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상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는 가상공간상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활용을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법률은 전자서명법에 정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인증기관에 관한 법규내용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내용이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자에게 혼란을 주게됨으로써 신뢰성을 저하하게 한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서명의 방법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

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자거래기본법에 전자서명·당사자인증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내용은 전자서명법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살펴볼 때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를 어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 중요함을 인식하여 현행 여러 법률에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내용에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에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한다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 소비자보호법과 가상공간상 소비자보호법으로 이원화하는 입법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률로서 규정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종래의 법률규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부부처에 의한 해당업무의 독립적 수행·집행이 요구되는 추진력 등을 고려한다면, 개별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형태로 개별법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정부부처의 업무상의 협조·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특정영역이 결과적으로 비대해짐으로써 전자거래에 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로부터 해당법률의 집행으로부터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 4 절 계약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편

전자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전자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법리구성, 전자 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소비자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개별적인 영역은 전자거래에 한정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하여 검토되는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전자거래라는 범규범에서 체계화하기 위하여 구획한 것이다. 이들 개별영역에 있어서 정책의 수립·집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전 영역을 통합하여 법적 문제를 하나의 법률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기존의 법률체계에 비추어 적정하게 개별 영역별로 분할하여 정책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또 다른 연구·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에 관한 법적 내용에 근간을 두고 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체계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거래에 관한 전 영역이 통합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법률이 제정되어 집행되는 경우에, 전자거래로 한정된 영역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업무가 비대해짐으로써 빚어지는 문제점과 기존의 영역에 비추어 보아 적정한 영역구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약점·업무의 전문화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노정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논점은 전자거래가 이전의 통상적인 거래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것인가, 정보통신망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였지만, 거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실체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점은 민사법적 접근의 구체적인 검토로부터 숙고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론만을 제시하면, 계약법적 검토에 따를 때 후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40)</sup> 새로운 형태의

40) 배대현, "정보사회로의 변혁과 민사법상 수용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8권 2호, 10쪽 이하.

전자적 의사표시<sup>41)</sup>(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sup>42)</sup>)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결과를 최종적인 의사표시로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즉, 컴퓨터에의 정보입력이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입력한 자료의 전송으로 표의자의 의사를 나타낸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통상의 의사표시와 상이하여 종래의 법리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그 동안 학계의 관심 속에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져 왔다.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의사표시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의 주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가상공간상 전자적 거래가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거래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달되므로 여전히 의사표시는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sup>44)</sup> 거래당사자는 거래의 실체인 계약내용을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하고, 구성된 내용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등에 의지한다(전자적 절차에 따라). 이 점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통적 의사표시론에 좇아 검토되므로, 예컨대 계약의 경우에 전통적인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종래의 경우와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sup>45)</sup>

41) 기계적 자동화의 구별, 컴퓨터의 의사구체화, 행위지배가능성의 불완전성, 네트워크화된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의사표시 대신에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109쪽). 반면에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의사표시와 컴퓨터가 자율성을 지니는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통칭으로서 전자적 의사표시로 칭하자는 견해도 있다(송오식, 전자상거래와 법, 금왕출판사, 2000, 71쪽).

42) 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사법연구 제1집, 청원법률문화재단, 1992, 50~51쪽.

43)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393쪽;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344~345쪽;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319~320쪽;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6, 125쪽 참조.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31권 제3호, 1998/9, 60쪽.

44) 최명구, "전자적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문제",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5, 439쪽. 이에 반하여 on-line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계약의 체결과정 및 성립 여부에 대하여 양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의사표시의 본질론과 해석론에 커다란 의문이 생긴다는 보는 견해도 있다(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검토", 비교사법 제6권 1호, 1999/6, 298쪽).

45) Jeff C. Dodd & James A. Hernandez, "Contracting in Cyberspace", Com-

이와 같이 전자거래를 계약법적 측면에서 검토할 때, 기존의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거래가 이전의 거래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민사법적 측면에서 양자를 법리상 구별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를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 의지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법·제도의 논의는 기존의 거래와 거래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기존의 법질서와 일련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은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정하고 있다. 이 점은 전자거래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집행상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는 소비자보호법과 통신판매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연계로부터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에 따라 규율되며,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법률내용을 정비할 때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정책방향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전개하는 데 요청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성격은 가지는 법률로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5 절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전자거래에 관련 있는 법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근본취지는 관련법률간의 상호모순 또는 중복되는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법리상의 모순을 제거하거나 합리성·효율성을 근간으로 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

---

puter Law Review and Technology Journal, 1998/Summer, p.3; Helmut Kohler, "Die Problematik automatisierter Rechtsvorgänge, insbesondere von Willenserklärung", AcP 182, S.133; Dieter Medicus, *Allgemeiner Teil des BGB*, 4. Aufl., 1990, S.101~103.

화하는 데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전자거래에 관한 여러 법률은 전자거래라는 안목으로부터 고찰한 것인데, 실제 거래계는 On-Line/Off-Line상 혼합된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Off-Line상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거래정보가 On-Line에 옮겨져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반대의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정에서 On-Line에 한정된 법률문제에만 고착하게 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에서 드러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On-Line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히 법규정을 마련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어느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관계에서(Off-Line상) 개인정보를 여전히 쉽게 요구하거나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On-Line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것과 같이 대통령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확대·적용되지만, 실제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사무소, 구청, 동기소에서 발급받는 각종의 등본에 표시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가지고 On-Line상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sup>46)</sup>, 그 유사한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On-Line에 한정된 법률규정의 마련으로 모든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의의 기반은 더 이상 정보사회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정보사회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모든 정보(자료)가 정보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점으로부터 그간 산업사회에서 경험하지

46) "고급주택가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훔쳐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해온 '신종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강남, 서초, 광진구 일대 대형아파트 단지과 고급빌라의 우편함에서 훔친 우편물에서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고 이들 명의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신용카드 20여장을 발급 받아 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오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오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강남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이동통신 요금명세서, 신용카드 요금청구서,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등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서울 시내 40~60평대 아파트 10여 곳에서 우편물을 훔쳐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선일보 2001년 8월 10일자 기사 내용).



못하였던 각종의 새로운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On-Line/Off-Line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규범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반쪽의 내용만을 규정함으로써 전부를 잃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규범의 마련은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망과 반드시 연계되어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보다 On-Line/Off-Line을 망라하는 법규범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률로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전자거래와 관련있는 법률은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모두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당해 법률에서 특별히 담아야 할 내용에 한정하고, 그밖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내용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On-Line/Off-Line상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재편한다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5 장 요약 및 결어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주지하는 것과 같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정책수립·집행의 필요에 따라 개별입법의 형태로 마련되었다. 각 법률은 정부부처의 소관 업무에 터잡아 입법되었지만,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정책이 서로 중첩되거나 명확하게 업무영역이 나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기인하여 또는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업무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빚어진 문제점으로 법률규정이 중복되거나 일정한 법적 체계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위에서 제시한 7가지 항목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법률규정을 찾아 분류하고 이들 규정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체계화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세부항목에 대한 개별연구가 각론적 논의로 구체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복된 논의를 피하기 위하여 총론적인 검토에 그치는 결과만을 제시하게 되었다. 전자거래·정보통신망관련 정책간의 관계로부터 정보통신의 기반구축을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하고, 전자거래를 활성화에 요구되는 법체계의 정비를 이끌어내는 데 법적 기초로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콘텐츠의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법적 기초로 하여 안전한 전자거래와 소비자의 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규내용의 검토를 요약하면, 첫째,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에 있어서, 현행법상 전자거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이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규정한 법률간의 규정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기본법과 대외무역법상 전자거래의 법적 정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정보 등의 무체물의 이용을 포섭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전자거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적 정의를 준용하는 근거나 관련규정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개방형정보통신망이 거래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 이전에도 EDI방식에 기한 전자문서·전자서명을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이들 법률은 현행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전자서명과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인터넷 등의 개방형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전자거래기본법의 법률규정이 전자서명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원화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점은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문서를 통하여 송·수신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전자서명법의 법리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내용을 전자서명법의 규정 내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현행 전자서명법의 개정(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기술중립적 전자서명의 방식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지적된 문제점이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에 있어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계약법적 검토내용은 해석을 통한 법리적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관련하여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를 발신주의·도달주의의 법리고찰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 문제는 독일민법의 개정(안)에서 시사하는 것과 같이, 민법전의 규정에 끌어들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보호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정부시책의 방향은 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한다 할지라도,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Off-Line/On-Line상의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하지 못하는 한, 전자거래를 종래 Off-Line상의 거래와 분리·독립시켜 물품(또는 재화), 용역 및 정보 등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소비자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개별적인 법률규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입법취지나 그 규정이 상호간에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일된 법규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Off-Line/On-Line이 연계되어 빛어지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법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섯째, 기술·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보호대상을 현행법에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이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

련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육성법률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술의 선진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권부여와 관련하여 현행 특허법의 해석론에 의한 해결책 외에 발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안)에서 제시된 편집저작물로 분류되지 못하는 편집물(database)의 보호에 관한 규정신설은 지적재산권분야의 새로운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좋은 예시에 속한다.

일곱째, 전자거래를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함에 있어서, 이는 행정투명성확보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대상이다. G2B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G2B기반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조달관련 물류체계 개선과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규에 담아낼 때에 비로소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거래법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계약당사자로 하는 전자계약의 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개별적인 작은 주제별로 살펴본 것이므로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하여 몇 가지 항목 또는 기준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다. i) 정보·전자문서 등의 민사법에의 접근, ii) 국제적 규범체제와의 조화와 입법, iii) 시장에서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iv) 계약법측면에서 살펴본 전자거래기본법의 개편 및 v)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를 논의기준으로 삼아 체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전자거래와 관련 있는 여러 법률을 전자거래의 개념,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확보, 전자문서의 이용에 따른 계약법적 접근, 소비자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기술·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민간부문·공공부문의 연계적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법률상호간의 관련성의 분석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와 법리상의 체계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현재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간 정보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법률에 힘입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

청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커다란 파고를 넘어 물길을 열어 놓았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보화정책, 전자거래의 활성화대책은 세계 각국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률의 신속한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좋은 밑받침이 되었음을 말한다. 다만, 현재의 이러한 노력을 倍加集中하여 법·제도가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제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분야를 육성·발전시키는 전인차역할을 맡아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관련법률의 체계화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 곽윤직/박영식, 주해민법[II], 박영사, 1999
-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 \_\_\_\_\_,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사법연구 제1집, 청헌법률문화재단, 1992.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516호, 1999/10
- 노태악, “전자거래 관련 법률용어의 개념정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안(설명자료)”, 2001/4
- 배대현, 전자서명·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 \_\_\_\_\_, “Mass-Market License 체결과 소비자보호”, 비교사법 제5권 2호, 비교사법학회, 1998
- \_\_\_\_\_, “인터넷 이용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 민사법학 제17권, 한국민사법학회, 1999
- \_\_\_\_\_, “정보사회로의 변혁과 민사법상 수용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20권, 한국민사법학회, 2001
-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법, 금왕출판사, 2000
- 양장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 이영준, “민법총칙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제17호, 1999
- \_\_\_\_\_, 민법총칙, 박영사, 1996
-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2001/5호
- 정상조, “인터넷 콘텐츠의 보호”, 인터넷 법률 제2호, 2000/9

참고문헌

- 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검토", *비교사법* 제6권 1호, 1999/6
- 지원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조* 2000/8월호
- \_\_\_\_\_,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31권 제3호, 1998/9
- 최명구, "전자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문제",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5
- 최상호, "인터넷상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사기와 착오", *사회변동과 사회 질서*, 2000, 박영사
- 한국민사법학회, *민법(채산법)개정의 착안점과 개정안*, 2000/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0/7
- Alan Westin,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1967
- ALI/ NCCUSL,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B-Licenses* (Draft on Aug. 1, 1998)
- Anne W. Branscomb, *Who Owns Information*, Basic Books, 1994
- Arther R. Miller, "Personal Privacy in the Computer Age: The Challenge of New Technology in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67 *Michigan Law Review*, 1089 (1969)
- Blanca R. Ruiz,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A European and an American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merg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Digital Dilemma: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National Academy Press, 2000.
- Dan L. Burk, "Muddy Rules For Cyberspace", 21 *Cardozo Law Review* 121 (1999)
- David L. Hayes,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 Agreements On-Line and Off-Line", <<http://www.fenwick.com/pub/shrnkwrp.html>> 참조



- Debra A. Valentine, "Privacy On the Internet: The Evolving Legal Landscape", 16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401 (2000)
- Dieter Medicus, *Allgemeiner Teil des BGB*, 4. Aufl., 1990
- Domingo R. Tan, Comment, "Personal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Comparison of Internet Data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21 Loy. L.A. Int'l & Comp. L.J. 661 (1999)
- Dorothy E. Denning, *Internet Besieged*, ACM Press, 1998
- Edward A. Cavazos and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MIT Press, 1995
- Harold S. Reeves, "Property In Cyberspace", 63 Univ. Chicago Law Rev. 761 (1996)
- Helmut Köhler, "Die Problematik automatisierter Rechtsvorgänge, insbesondere von Willenserklärung", AcP 182, S.133
- Henry H. Perritt, Jr., *Law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spen & Business, 1999
- J. H. Reichman, Jonathan A. Franklin, "Privately Legis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onciling of Contract with Public Good Uses of Information", 147 Univ. Penn. L. Rev. 875, (1999)
- Jeff C. Dodd & James A. Hernandez, "Contracting in Cyberspace", Computer Law Review and Technology Journal, 1998/Summer
- Jeff Sovern, "Opting In, Opting Out, Or No Options At All: The Fight For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74 Wash. L. Rev. 1033 (1999)
- Jerry Berman & Deirdre Mulligan, "Privacy in the Digital Age: Work in Progress", 23 Nova L. Rev. 551, 554 (1999)
-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50 Stan. L. Rev. 1193 (1998)

참고문헌

- Joanna Buick and Zoran Jevtic, *Cyberspace*, Totem books, 1995
- John P. Barlow, "The Economy of Ideas: A Frame for Rethinking Patterns and Copyrights in the Digital Age", *Wired* 2, 03, 85 et seq., (1994)
- John Rothchild, "Protecting The Digital Consumer: The Limits of Cyberspace Utopianism", 74 Ind. L. J. 893 (1999)
- Kent D. Stuckey, *Internet and On-Line Law*, Law J. Seminars -Press, 1996
- Lance Rose, *Netlaw*, McGraw-Hill, 1995
-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 Lesley E. Harris, *Digital Property: Currency of The 21st Century*, McGraw Hill, 1998
- M. Ethan Katsh, *Law in a Digit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Martin H. Samson, "Click-wrap Agreement Held Enforceable", New York L. J. (June 30, 1998), <<http://ljx.com/internet/0630click.html>>
- Pamela Samuels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act Law for the Information Age", 87 California Law Review 1 (1999)
- \_\_\_\_\_, "Privacy as Intellectual Property?", 52 Stan. L. Rev. 1125 (2000)
- Peter Lyman, "The Article 2B Debate and The Sociology of The Information Age", 13 Berkeley Tech. L. J. 1063 (1998)
- Peter P. Swire, "Cyber-banking and Privacy: The Contracts Model", <[www.osu.edu/units/law/swire.htm](http://www.osu.edu/units/law/swire.htm)>
- Raymond T. Nimmer, "Images and Contract Law-What Law Applies to Transactions in Information", 36 Hous. L. Rev.1 (1999)

- Ronald S. Laurie, "Electronic Commerce & Applied Cryptography: Mapping the Patent Minefield", 491 PLI/Pat 25 (1997)
- Samuel D. Warren and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 Soergel-Wolf, Kommentar des BGB (12. Aufl.)
- Steven A. Bibas, "A Contractual Approach to Data Privacy", 17 Harv. J.L. & Pub. Pol'y 591 (1994)
- Susan J. Drucker and Gray Gumpert, *Real Law@Virtual Space: Regulation In Cyberspace*, Hampton Press, 2000
- Thomas J. Smedinghoff, *Online Law*, Addison Wesley Developers Press, 1996
- \_\_\_\_\_, Ruth H. Bro, "Moving with Change: Electronic Signature Legislation as a Vehicle for Advance E-Commerce", 17 J. Marshall J. Computer & Info. L. 723 (1999)
- William Gibson, *Neuromancer*, Ace Books, 1984
-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 L. Rev. 383, 390-403 (1960)

<[ucitaonline.com/scm.html](http://ucitaonline.com/scm.html)>

<[www.law.upenn.edu/bll/ulc/ucita/ucita01.ht](http://www.law.upenn.edu/bll/ulc/ucita/ucita01.ht)>

<[www.bmj.bund.de/ggv/bgbregel.pdf](http://www.bmj.bund.de/ggv/bgbregel.pdf)>

<[www.onsale.com](http://www.onsale.com)>

<[www.ebay.com](http://www.ebay.com)>

<[www.haggle.com](http://www.haggle.com)>

<[www.auction-sales.com](http://www.auction-sales.com)>

<[www.priceline.com](http://www.priceline.com)>

<[www.2BGuide.com/hbimmvc.html](http://www.2BGuide.com/hbimmvc.html)>